

社會開發의 觀點에서 본 社會福祉要員의 養成 및 現任訓練의 教科課程開發을 위한 研究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Social Welfare Licence Qualification
and In-Service Training in the Context of Social Development

張 索 英

(國立社會福祉研修院 教授)

目 次

- | | |
|--|----------------------------------|
| I. 序 論 | 2. 社會福祉要員 養成教育의 現況과 展望 |
| II. 社會開發의 目標과 80年代 社會福祉政策課題
및 展望 | 3. 社會福祉 現任訓練의 現況과 展望 |
| 1. 社會開發의 目標과 社會福祉 | IV. 社會福祉 教科課程開發의 背景과 最近의
動向 |
| 2. 80年代 社會福祉政策의 課題 | 1. 社會福祉 教科課程開發의 背景 |
| 3. 80年代 社會福祉의 展望 | 2. 最近의 動向 |
| III. 80年代 社會福祉 展望에 따른 社會福祉 要
員의 養成教育 및 現任訓練 | V. 社會福祉要員 訓練의 教科課程 開發을 爲
한 提言 |
| 1. 社會福祉 要員의 養成教育 및 現任訓練의
必要性 | |

I. 序 論

國家가 社會福祉 分野의 要員을 養成하고 再訓練시키는 등의 教育的인 投資는 國家의 長期的인 開發計劃의 일환으로서 計劃實施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막대한 國庫의 損失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本 論文에서는 II章에서 社會開發의 目標과 80年代 社會福祉政策課題 및 展望을 먼저 살펴보고 III章에서는 그러한 80年代 社會福祉 展望에 따른 社會福祉要員의 養成教育 및 現任訓練의 必要性을 考察하고 教育實施의 現況과 展望을 檢討하였다. IV章에서는 그간 國內外的으로 社會福祉教育을 自國의 實情에 맞게 土着化하려는 試圖와 教科課程을 發展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므로 그간 國內外的인 社會事業學界의 活動狀況을 分析함으로서 社會福祉 教科課程開發의 흐름과 方向을 把握하였다. 그리고 V章에서

은 國立社會福祉研修院의 社會福祉委員 訓練의 教科課程開發을 爲한 提言으로 結論을 맺었다.

II. 社會開發의 目標와 80年代 社會福祉政策課題 및 展望

1. 社會開發의 目標와 社會福祉

60年代 後半부터 우리나라는 社會의 安定과 發展을 期하기 爲하여 經濟開發에서 一進한 社會開發에 關心을 갖고 各 部門別 投資를 擴大시키는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60年代 UN總會에서 強調하였던 社會開發政策이나 開發途上國들이 取하였던 社會開發戰略은 主로 經濟成長의 補助役割 또는 經濟成長을 爲한 戰略的 道具로서 혹은, 後續的 補完措置로서 看做되었기 때문에 部門別 開發 또는 問題에 對한 對症療法的 社會開發을 위주로 政策이 形成되었고 執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保健, 教育, 社會福祉部門等 部門別로 政策課題를 選定하여 公共投資를 하는 方式의 社會開發戰略을 主軸으로 삼아왔다. 그러한 社會開發의 戰略은 部門別 改善 또는 發展의 總合이 곧 經濟成長의 社會的 目標를 達成하는 것과 같다는 前提下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UN專門機關들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 開發計劃 擔當者들은 그러한 前提에 批判的인 態度를 갖기 始作하였다. 왜냐하면 不適合한 社會制度, 資源配分上의 不均衡, 人的資源의 不充分과 같은 與件下에서 出發한 社會開發은 역시, 不適合한 結果로 歸結된다는 現象이 大部分의 實例에서 立認되었기 때문이었다!) 故로 “이러한 不適合한 狀態의 是正은, 全面的인 開發戰略에 있어서 심각한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²⁾ 고 한 UN報告書는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背景에서 社會福祉서비스의 開發政策이나 戰略도 70年代부터는 國家全體의 인 發展目標의 必須的인 構成因子로서 看做되게 되었다. 이런 脈絡속에서 社會福祉의 目標은 “人間開發”에 두게 되었다. 즉, 社會福祉政策이나 서비스의 提供을 通하여 各者가 自己形成과 自己實現을 할 수 있으며 生産的이고 責任性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潛在能力이나 力量을 開發해 주는 일이다. 특히 社會經濟構造上, 弱한 位置에 있는 不遇階層 또는 적절히 生産活動에 動員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나 落後地域들이 自立할 수

1) 魚允培, “80年을 向한 社會福祉의 課題와 戰略”,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1979, 卷호, p. 111.

2) UN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v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Approach for Planning for United Socio-Economic Development: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Review, No.3 (1971), p. 1. Ibid, p. 111.

있는 能力을 갖추도록 社會福祉政策은 廣範圍하게 目標을 設定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社會福祉서비스 그 自體가 가지는 固有한 價値의 實現이 全體的인 開發目標에 結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側面에서 N. Rescher 教授는 社會福祉를 社會成員들의 福利要請을 增進시키기 爲한 하나의 道具役割을 強調하면서 또한 社會秩序의 形成과 維持를 結付시키고 있다.³⁾

社會福祉에 關한 國際專門家들의 見解도 大同小異하게 以上과 같은 個別的인 서비스側面과 國家發展政策의 하나로써 廣範圍한 社會開發의 目標達成을 爲한 機能的 側面을 同時에 強調하고 있다.

1970年 9月 마닐라市에서 「社會開發의 새로운 戰略과 社會福祉의 役割」이란 主題로 모였던 第15次 世界社會福祉大會(ICSW)는 國家發展政策 특히 社會開發에 있어, 社會福祉의 役割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우선 10個 項目에 解當하는 社會開發의 目標을 追求하는 것이 要望된다고 하였다.⁴⁾

- (1) 所得과 富의 增加와 衡平的 配分
- (2) 保健과 自然環境의 保全
- (3) 住宅
- (4) 雇傭
- (5) 教育
- (6) 娛樂施設
- (7) 家族福祉
- (8) 民權伸張
- (9) 安全
- (10) 共同體 意識의 鼓吹

以上에서 보듯, 社會開發은 社會全般에 걸친 社會的 條件의 改善과 사람들의 福利增進에 本質적으로 關聯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社會開發의 目的을 社會全體發展의 諸 側面과 關聯시키고 社會開發長期計劃의 主要한 社會的 目的을 다음과 같이 設決하고 있다.⁵⁾

- I. 人的資源, 教育, 文化 및 科學의 開發
- II. 完全雇傭과 所得, 賃金, 勤勞條件, 生活條件의 向上
- III. 計劃樹立과 意思決定에의 參與

3) Nicholas Rescher, Welfare: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2), p. 6. Ibid. p. 112.

4) ICSW, New Strategies for Social Development: Role of Social Welfar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1), pp. 12~26. Ibid. p. 112.

5) 保健社會部, 社會開發 - 部門別社業展望 - 1974. pp. 30~31.

IV. 賃金과 所得 및 生活水準의 社會的 均等化, 機會均等, 婦人들의 社會的 平等; “開放社會”의 發展을 爲한 보다 낡은 諸 條件의 創出과 消費選好體制的 向上; 才能의 最大利用과 諸 革新을 爲한 보다 낡은 條件의 創出

V. 保健, 住宅, 都市 및 農村環境, 리크리에이션施設 등의 向上

VI. 老齡者와 不具者 등 脆弱階層의 諸般 社會的 條件의 向上과 社會保障制度의 擴充, 靑少年의 福祉.

과 中期開發計劃에서는 이러한 全般的 目的이 實質賃金, 所得, 消費 등 등의 成長率과 같은 特定目標로 옮겨진다. 따라서 諸 資源이 각 社會部門 및 社會的 事業計劃에 創當 된다.

그리하여 政府가 치중할 諸 社會的 서비스部門을 中心으로 한 政策手段으로서의 社會開發目的을 다음과 같이 細分하였다.

1. 教育의 質的, 構造的 改善과 人力資源의 開發 및 雇傭增大
2. 保健醫療의 均等的 向上
3. 人口政策事業의 強化
4. 住宅 및 生活環境의 改善
5. 社會保障制度의 導入擴充
6. 社會福祉事業의 強化
7. “새 마을運動”과 地域社會開發의 積極的 推進
8. 構造的 制度的 諸 條件의 改善
9. 社會氣風醇化에 依한 精神基盤의 確立⁶⁾

이러한 廣範圍한 社會的 目標達成에 社會福祉는 制度로서 어떤 役割을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느냐에 關하여 同 大會는 네 가지 役割을 重點的으로 強調하였다.

첫째, 財貨와 서비스의 衡平的 配分

둘째, 社會分裂의 豫方

셋째, 人間資源의 開發

넷째, 不可缺한 社會變動의 誘導⁷⁾

이상과 같은 方向으로 우리의 社會政策과 서비스도 앞으로는 展開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發展段階에 있어서 資源의 制限으로 構想된 모든 社會福祉서비스를 同時에 擴充할 수 없기 때문에 優先順位의 選定問題는 不可避하다. N. Rescher 教授의 見解와 같이 福祉의 모든 次元에서, “基本的인 本質”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⁸⁾

6) Ibid. pp 47~62.

7) ICSW, New Strategies for Social Development: Role of Social Welfar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1), pp. 12~26. op. cit, p. 112.

8) N. Rescher op. cit, p. 8, Ibid. p. 113.

住宅建立 對 中產層用 住宅建立, 農村 對 都市 등의 問題가 提起될 때에는, 前者에 優先 順位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點은 最近 “開發에 對한 基本的 人間欲求의 接近方法”이란 側面에서 새롭게 強調 되고 있다.⁹⁾ 最近 O. E. C. D.가 發行한 한 報告書에 依하면 具體的인 政策用語로 볼 때 基本的 欲求의 概念은 開發을 內的으로 격려가 된 動機와 成長에 重點을 두면서 無視 당한 機會, 無視당한 部門과 無視당한 사람과 같은 經濟成長에 未發掘된 潛在力을 있게 해 주는데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¹⁰⁾

要컨데, 社會福祉의 役割은 人間의 基本的 欲求를 充足시켜 주면서, 同時に 長期的인 國家發展 政策의 目標을 達成한 수 있는 方向으로 그 政策目標을 設定하고 手段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2. 80年代 社會福祉 政策의 課題

80年代를 向한 우리나라 社會福祉의 課題를 以上과 같은 社會開發的 觀點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定立해 본다.

첫째, 福祉政策은 實質的인 意味에서 所得과 富, 雇傭, 教育, 醫療保護 등의 機會가 偏在되거나 不平等하게 點有되는 것을 豫防하며 또는 是正할 수 있도록 樹立해야 한다. 이 目標을 爲한 第一段階的 作業이 곧 國民의 最低生活의 營爲에 必要한 所得을 保障해 주며, 질병으로부터 解放을 얻게해 주는 社會保障制度의 整備와 運營方案의 確立이라 하겠다. 長期的으로 볼때, 所得再分配 手段으로서, 또는 社會的 不安定要因의 除去目的으로서,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國家의 財政的 投入이 必要하다. 우선 短期的으로 볼때 極貧者와 低所得層들의 生活安定對策으로서의 所得保障에 對한 方案이 體系化되어져야 할 것이다. 一般 國民들의 所得과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現行 生活保護對象者들에 對한 所得保障이나, 其他 給與水準은 相對的으로 零細化해 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福祉政策의 課題는 長短期 모든 目的을 爲해 社會福祉事業分野의 豫算을 策定함에 있어서 一般的인 政府豫算決定의 慣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漸增主義를 脫皮하여 GNP의 몇 %를 1980年代 前半에 걸쳐 매해 開發計劃期間 別로 投入한다는 總量計劃이 必要하다. 또는 臺灣의 경우와 같이 土地讓渡稅나 土地增價稅 全額을 社會福祉基金으로 轉入使用하는 바와 같은, 社會福祉事業基金의 造成이 必

9) Ibid, p. 113.

1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1978, Review (Paris, 1978), p. 3, Ibid, p. 113.

둘째, 福祉政策은 人間開發에 不可缺한 教育, 保健, 醫療施惠等 諸般 社會便益提供事業의 量的擴大와 質的充實에 目標을 두어야 한다. 좁은 意味에서의 福祉行政은 이들 事業의 開發, 組織化, 傳達體系의 合理的인 運營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財源의 擴大에 따라 이제까지 社會福祉 項目에서 除外되었던 部門을 順位的으로 包含시켜가며 또한 그 質的水準을 높여가는 政策體系가 長期的인 眼目에서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社會福祉서비스의 事業을 적절하게 效率的으로 提供할 수 있는 政府의 責任을 確固하게 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行政體系의 確立과 專門要員의 養成과 確保가 並行되어야 하겠다. 現 第4次 5個年 計劃은 社會開發에 力點을 두고 있으나 그 內容面에서 보면 社會開發要員에 關해서는 別 言及이 없다. 80年代의 福祉政策은 福祉行政 專門要員과 民間 社會福祉 專門要員에 對한 長短期 人力需給計劃을 確立하고 國內外 教育機關에서 訓練시키는 것이 絶對 必要하다 하겠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얼마전 總務處에서 一般行政考試에 分野別로 專門科目을 追加한 것은 이러한 각 分野의 專門化 要請에 부응한 것으로서 적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福祉政策은 上下水道, 公園, 病院, 公共住宅, 社會福祉施設의 近代化等 生活環境의 整備나 改善을 通하여 國民生活의 基礎的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흔히 公共財의 擴充이라고 稱한다. 最近 先進國에서는 社會保障制度가 確立되어 있기 때문에 福祉政策의 焦點이 人間開發과 바로 이 公共財擴充에 集中되고 있다.

넷째, 福祉政策은 再活事業을 包括적으로 마련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心身障礙者뿐만 아니라 非行靑少年이나 出所者들이 正常的으로 社會에 復歸하여 適應할 수 있는 對策과 事業을 長期的으로 計劃을 樹立하고 推進해 나아가야 하겠다. 社會制度 環境의 改善이 이들에 對한 個別的인 事業活動과 함께 要請된다.

3. 80年代 社會福祉의 展望

90年代를 向한 80年代의 國民福祉는 계속적인 經濟成長과 社會開發에 對한 投資의 擴大, 社會福祉政策의 重視등으로 相當히 向上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考察한 社會福祉政策 課題와 關聯하여 國民의 福祉的 期待를 다음과 같이 展望해 본다.

첫째, 現在 政府는 今年 7月 1日을 기해 第2種 醫療保險을 實施, 擴大를 서두르고 있는 바, 醫療保險制度는 理想的으로 까지 가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80年代 後半期가 되면 거의 全國的으로 擴大되어 醫師가 患者를 對하는 態度나 方法에도 크게 變化가 올

11) Ibid, p. 114.

하여 醫療保險을 取扱하는 保險業務가 새롭게 增加될 것이고, 政府는 醫療保險 業務 擔當 要員에 對한 教育, 訓練과 一般 國民에 對한 啓蒙教育을 重要視해야 한 것이다.

둘째, 날이 갈수록 靑少年의 問題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들의 非行, 脫線, 犯罪 등을 治療, 豫防하기 爲한 相談, 娛樂, 圖書館 利用, 餘暇善用등을 爲한 施設이 보다 많 이 그리고 多樣하게 생길 것이며, 이들을 指導하고 先導하는 要員들의 增加와 專門化가 要請될 것이다.

셋째, 觀心이 高潮되고 있는 幼稚園이나 託兒所, 幼兒園등과 같은 學齡前 어린이를 保護하고 養育, 教育하는 施設과 方法은 急速度로 發展될 것이 豫想된다. 現在 幼兒教育 機關의 惠澤을 받는 어린이는 幼稚園, 어린이 집, 새마을協同幼兒園, 季節 託兒所를 모두 包含해도 全體 어린이의 약 8% 未滿에 이르는 實情이다.

이것이 다른 어느것보다 切實한 理由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幼兒期의 이른바 早期教育의 重要性이 理論적으로 만이 아니라 實際적으로 認識되어 切實한 對象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既婚女性의 就業增加로 인하여 兒童의 社會的 保護와 養育, 教育에 對한 要請이 增大되어 이들을 모아 기르고 가르치는 專門機關이 必要한 것은 너무나 當然한 要求이기 때문이다.

넷째, 老人福祉法의 制定으로 점차 老人福祉를 爲한 施設과 方法도 크게 改善되어 그들이 餘生을 즐기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마련될 것이 豫想된다.

다섯째, 女性이 오랫동안 不平等한 位置에서 苦生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不利한 狀況에 놓여 있는 것이 事實이므로 이들을 爲한 配慮와 施設도 많은 增進이 있을 것을 期待해 본다.

여섯째, 이제까지와는 달리 모든 職場에서 일하는 勤勞者와 勤勞靑少年의 福祉를 爲한 娛樂, 讀書, 教養, 運動등의 多樣한 福祉프로그램이 짜여지고 實行될 것이다. 이러한 企業福祉에 對한 界圍氣는 이미 造成되어가고 있거니와 앞으로는 이것이 本格的인 事業의 하나로 꼽히고 豫算에 까지 反映되게 될 것이 豫想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職場이나 工場의 일 自體가 能率的이 될 수 없을 것이며 自然 衰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앞으로 餘暇를 善用하고 즐기려는 人口는 想像外로 急速한 增加現象이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이런 國民 또는 市民의 要求에 副應하고자 하는 觀光 및 娛樂施設이 생기고 生活의 質을 向上시키는 機會를 提供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各種 娯樂서비스業은 눈부신 發展과 競争속에서 많은 市民을 誘引할 것이다.¹²⁾ 또 이러한 狀態는 바로 現代的이고 先進型에 屬하는 生活體制로서 누구나 바라는 일 중의 하나라 할

12) 朴俊熙, "80年代 社會福祉 實現을 爲한 教育戰略",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1979. 번호, p. 94.

7 있다.

또한 社會가 점차 高度로 産業化, 機械化, 多樣化하게 됨에 따라 각종 精神障害者와 肢體不自由者등이 增加할 것으로 豫測되며 이들의 治療와 教育을 爲한 施設이 크게 擴張될 것이다. 이것은 現在 保健社會部가 障礙者福祉法을 制定, 公布한 것과 文敎部에서 身體障礙者에 對한 教育을 長期教育計劃의 하나로 包含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끝으로 備論을 수 없고 또 備論아서도 아니되며 生覺하기에 제일 첫째로, 꿈을 事項이 있다. 그것은 바로 充實한 社會保障政策의 實現이다. 그동안 一部分은 이 制度를 漸次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는 努力을 하여 왔다.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와 醫療保險, 公務員이나 私立學校敎員年金制度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零細民 또는 失業者의 最低生活의 維持를 可能하게 하는 最低賃金制의 實施라든가 失業保險制度, 農漁民이나 自營 商人들에게 까지도 惠澤이 돌아갈 수 있는 醫療保險制度 및 全國民이 老後의 生活을 保障할 수 있는 國民福祉 年金 制度의 實施등이 要請되고 있으며 80年代에는 이 制度의 實施를 爲한 基盤이 굳혀지고 部分的으로 나마 이 制度가 實施되어 점차 擴大해 나갈것을 期待해 본다.

Ⅲ. 80年代 社會福祉展望에 따른 社會福祉 要員의 養成教育 및 現任訓練

1. 社會福祉 要員의 養成教育 및 現任訓練의 必要性

現代社會는 科學技術과 産業의 革新的 發達 및 文明의 發展으로 인하여 社會 또는 部面에 急激한 變化를 招來하고 있다.

基本的인 民主市民으로서의 培養과 그에 따른 人格의 涵양, 더 나아가 學問의 追究를 爲한 基礎的 바탕을 形成시키기 爲한 最高의 教育機關으로서 大學教育은 예나 지금이나 重要하다함은 再論의 餘지가 없다. 그러한 大學의 本原的인 機能에 더하여 現代에 이르러서는 急激하게 變遷하는 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知識과 技術을 갖춘 人才로 如何히 養成하느냐 하는 것이 現 大學教育의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從來의 우리나라 大學의 社會事業教育을 냉정히 反省해 본다면 우리나라 社會福祉의 現實과 社會的 要請과는 거리가 있는 美國式 社會事業 理論을 中心으로 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美國社會에서 提起되는 社會的 問題들을 解決하기 爲한 一聯의 機能的 觀點에서 본 社會事業 方法論이다. 이러한 事實에 對한 反省과 批判이 大學 教育者들 간에도 이루어 지고 있는 狀況이며, 漸次 大學의 커리큘럼과 그 內容을 우리 社會가 必要

그러나 大學教育이 아무리 理想的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社會福祉 諸般分野에 充員된 人力을 모두 다 양성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大學 以上の 高等教育을 擴充한다 할지라도 全 人口중 大學教育을 받을 사람의 수요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 全體 勤勞者 2, 839, 243名중 大學卒業者가 차지하는 比率은 259, 053名으로서 9. 12%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 大學을 나온 女性就業者의 比率은 19, 015名으로서 0. 66%이다.¹³⁾ 한편 大學에 進學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大學水準의 高等教育을 받기를 갈망한다. 社會는 一般人들의 지식갈망에 對한 期待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고¹⁴⁾ 이들에게 必要한 社會教育의 機會를 提供, 活用함으로써 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人力資源化가 可能할 것이다.

또한 社會가 必要로 하는 高級人力養成이 一次的으로는 大學까지는 正規 學校教育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學校教育이 社會變遷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時代에 뒤떨어지는가 하면 無用之物이 되는 教育도 있다.¹⁵⁾ 따라서 特定 職業에 從事하던 成人에게 再教育의 機會를 주므로써 언제나 새로운 技術을 익히도록 하고 또 希望에 따라서는 個性에 맞춰 轉業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第5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社會教育法이 制定되었다 하겠으며, 國立社會福祉 研修院이 하고 있는 社會福祉從事者 資格 取得을 爲한 養成教育과 社會福祉從事者에 對한 職務訓練이 重要하다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겠다.

最近 UN本部에서는 社會福祉 一線에서 活動하고 있는 準專門家(paraprofessionals)의 訓練과 役割, 業務에 많은 關心을 보이고, 1971年과 1977年 社會福祉要員訓練에 關한 研究報告書를 낸 바 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이 社會開發要員訓練에 關한 事業을 중점적으로 맡아하고 있으며, 1977年의 社會福祉準專門要員訓練에 關한 UN報告書는 이에 對해 相當한 寄與를 하고 있다.¹⁶⁾ 이에 國際社會事業大學協議會(IASSW)에서도 社會開發의 目標達成에 寄與하는 一線(front-line) 社會福祉要員 訓練에 社會事業大學이 支援할 事項이 무엇인지 分析, 檢討하게 되었고, 각 大學이 이에 觀心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國際社會事業大學協議會(IASSW)에서는 1979년부터 1980年 까지 特別 Project事業을 벌이기로 하고, 1979年 5月

13) 勞動廳, 「노동통계연감」, 1980, p. 170.
 14) 裴成東, 80年代 社會福祉政策의 課題 - 政治學的 接近 -, 社會福祉, 1979, 봄, p. 62.
 15) Ibid, p. 66.
 16) Mukunda Rao, Short-Term Training for Social Development: The Preparation of Front-Line Workers and Trainers ed. by Barry, D. Rig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 1978, pp.iii-iv.

主要 比重을 차지하는 社會開發分野의 需要를 充足시키기 爲해서는 大學이나 大學院 水準의 專門教育만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또한 專門教育을 받지 않은 대다수가 이미 社會福祉分野의 一線에서 活動하고 있다. 이들 從事者를 短期 養成 訓練하는 機關은 물론이고 大學에서도 이에 關心을 갖고 協調를 아끼지 말아야 겠다며¹⁷⁾ 準專門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그 後 1980年 5月 우리나라에서도 韓國社會事業 大學協議會 主催로 이에 關한 國內 세미나를 가진 바 있고 同年 7月에는 IASSW 主催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評價 모임을 가졌다.

또한, 동남아시아 國家들이 대개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70年 國立社會福祉研修院이 全數 調査한 社會福祉從事者 人力調査 報告書에 依하면 약 1萬餘名(9,480名)이 社會事業分野에 從事하고 있는데 社會事業學科를 專攻한 大學 卒業者는 全體 4.0%에 불과한 378名이며 인접학파인 社會學科, 教育學科, 心理學科, 家庭學科, 醫學科, 看護學科 出身이 全體의 12.9%인 1,227名으로 이를 加算한다 하더라도 16.9%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準專門家(Paraprofessional)라 할 수 있다.

(表 1) 社會福祉從事者 專攻別 現況

기관별		학파별	사회사업학과	인접학파	기 타	계
민 간 기 관	사회사업기관		129 (19.7)	125 (19.1)	400 (61.2)	654 (100.0)
	사회사업시설		202 (3.4)	750 (13.8)	4,925 (83.8)	5,877 (100.0)
	공무원		47 (1.7)	352 (11.9)	2,550 (86.5)	2,949 (100.0)
계			378 (4.0)	1,227 (12.9)	7,875 (83.6)	9,480 (100.0)

자료: 국립사회복지 연구원, 사회복지종사자 인력조사보고서, 1970, p. 55, p. 146, p. 199.

이러한 理由들로 인하여 短期間의 集中教育에 依한 社會福祉 要員의 養成 및 社會福祉 從事者에 對한 現任訓練(In-Service Training)의 意義와 重要性은 明白한 事實이라 하겠다.

17) 張素英, IASSW 主催, Sri Lanka, "社會開發을 爲한 準專門訓練" (Paraprofessional Training for Social Development), 세미나 參加 歸國 報告, 1979.

1970년에 法律 第2191號로 制定 公布된 社會福祉事業法 第5條와 同 施行令 第9條 2, 3, 4, 5項 및 1971년에 制定된 社會福祉事業從事者 訓練規定에 의거, 國立社會福祉研修院은 社會福祉要員 養成教育을 1971년부터 實施하여 1980년까지 總 796名을 배출하였고, 高等學校卒業者 以上 學力을 가진 者가 應試할 수 있는 6개월 과정의 양성 3반과 初級大學卒業 以上이 資格이 되는 3개월 과정의 양성 2반이 主로 實施되고 있고, 1981년에는 양성 3반 80名, 양성 2반 50名을 計劃 實施하고 있다.

(表 2) 양성교육반별 연도별 실적('71 ~ '81)

반별 \ 연도별	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계	796	53	125	92	28		49	106	114	116	113	130
양성 1 반	31		31									
양성 2 반	194		24	28				41		53	48	50
양성 3 반	543	53	70	64			49	65	114	63	65	80
양성 4 반	28				28							

* 81년은 計劃 實施중임.

表2에서 보듯이 10年동안 양성 2반과 양성 3반의 수료생은 완만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원희망자 數를 알아보면 最近에 들어 희망자가 急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年엔 양성 2반이 모집인원 50名에 78名이 지원했고, 양성 3반은 모집인원 70名에 334名이 지원하여 4.8:1의 競爭率을 보이고 있으며, 1981년에는 現在 實施중인 양성 3반의 경우 모집인원 80名에 613名이 지원하여 7.7:1의 높은 競爭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약 80%가 수료 후 希望分野에 就業되고 있다.

(表 3) 양성교육 지원자 수와 모집인원 현황

년도	반별 구분	지 원 자 수	모 집 정 원	경 쟁 율
1981	양성 2 반	78	50	1.6 / 1
	양성 3 반	334	70	4.8 / 1
1981	양성 2 반	未 實 施		
	양성 3 반	613	80	7.7 / 1

* 資料: 國立社會福祉 研修院 敎學科

이것은 70年代까지는 社會福祉要員 養成教育을 爲한 基礎를 조성하는 時期였다할 수

사회복지 시설(특히 託兒施設)의 增加로 인해 이 分野의 需要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81년에 들어서는 嬰·幼兒에 對한 保護와 早期教育을 政策的으로 상당히 強調하고 있고, 全國 218個 市·郡·區에 새마을 協同 幼兒院을 設置하여 嬰·幼兒의 健全한 育成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社會福祉 一線에서 從事할 要員들이 계속 必要할 것이고 또 지원자의 數도 계속 늘어나리라는 展望이다.

또한 지난 6月 5日 心身障礙者 福祉法과 老人福祉法이 制定 公布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들을 爲한 福祉施設의 增加와 이에 從事할 要員이 반드시 必要할 것이다.

특히 제 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1982~86) 期間동안에는 社會福祉 傳達體系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를 確立하여 최소한 市·區·郡 單位別로 福祉社務所(假稱)가 設置될 것으로 豫상되는 바, 서비스 傳達의 一線的 機能을 擔當해야 할 社會福祉 專門要員의 確保도 分明 必要하다.

그러므로 社會福祉研修院은 이러한 高무적인 社會現狀에 反應하고 社會福祉 分野 專門化에 對한 社會的 要請에 대처하기 爲해 養成教育의 增員 내지는 強化와 社會福祉 各 分野別로, 例를 들어 託兒要員班, 相談要員班, 特殊施設要員班 등으로 區分하여 專門化 시키는 方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社會福祉 現任訓練의 現況과 展望

國立社會福祉 研修院의 社會福祉 現任訓練은 民間 社會福祉 施設, 機關, 團體등의 從事에 對한 研修教育과 社會分野 公務員에 對한 職務教育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1957年 부터 1980年 까지 民間人 總 14,727名과 公務員 8,870名을 教育하였고, 3日間の 연 찬회를 비롯하여 1週, 2週間の 教育까지 대상과 班의 特性에 따라 教育期間과 內容을 多樣하게 編成하고 있다.

70年代부터 80年代에 이르기까지 國立社會福祉 研修院이 民間人에 對한 社會福祉 現任訓練을 實施한 대상과 實績은 다음과 같다. 表 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各種 社會福祉 分野의 從事者들을 施設場 내지는 管理者 層에서 教師, 補母 및 施設行政要員에 이르기까지, 또한 社會福祉館 管理者 班이라든지 社會福祉 機關 社會事業家, 醫療機關 社會福祉事業家등 專門社會事業家에 이르기 까지 多樣한 對象들을 다 包括하여 教育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1年은 UN이 定한 世界障礙者의 해로서 政府에서도 障礙者에 對한 各種 事業을 展開하고 있는 바, 社會福祉 研修院에서도 心身障礙者 施設 管理者班, 心身障礙者 施設生活指導教師班, 心身障礙兒 子母班 등을 新設, 教育하는 것은 時代에 副應한 새로운 教科過程의 設置로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教育 實施에 있어 教育對象者가 實務에 必要한 특정분야의 知識과 技術을 習

(單位:名)

年 度	社會事業課程	公務員課程
計	14,727	8,870
1957	53	-
1958	76	29
1959	248	52
1960	219	36
1961	318	34
1962	141	362
1963	142	460
1964	315	468
1965	344	239
1966	317	378
1967	412	702
1968	313	1,288
1969	1,151	555
1970	667	510
1971	460	289
1972	651	243
1973	1,015	380
1974	1,155	298
1975	1,242	230
1976	1,507	324
1977	1,428	541
1978	1,109	469
1979	560	512
1980	878	515

는 것이 아니고, 教育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分野의 對象을 中央에서 行政力을 通하여 차출하여 教育을 시키기 때문에, 教育을 받고자 하는 動機(motivation)가 별로 많지 않은 대상들을 教育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再訓練을 받으므로 인해서 승진 등의 실질적인 보상제도나 教育의 유요 連한등 이에 關한 구체적인 규정 無 으므로 教育의 分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教育을 安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복적으로 계속 받게되는 경우가 있다.

國立社會福祉 研修院에서는 새로운 訓練 需要를 開發하기 爲해서 상당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訓練對象의 嚴選과 年限에 따른 合理的인 計劃 及 教育에 對한 動機誘發등에 더욱 內實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1萬 餘名 程度되는 全國의 社會福祉要員의 教育事項을 하나의 카드化하여 이들의 경력이나 離職事項, 再教育의 回數등 社會福祉人力의 科學的인 管理가 必要하다 하겠다.

公務員에 對한 社會福祉 現任訓練의 '70年~'81年 까지의 對象班別 實績은 다음과 같다. 公務員 教育도 管理

者級에서 初入者班까지 多樣하게 實施되고 있으며 '81年 부터는 醫療保險 行政班을 50名씩 3班 시험 케이스로 實施하고 '82年부터 醫療保險分野 教育을 강화시키려는 計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II章 '80年代의 社會福祉政策의 展望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醫療保險의 擴大 實施 及 전반적인 社會保障制度가 擴張될 것인바 國立社會福祉 研修院은 이 社會保障의 業務를 擔當할 要員들에게 專門訓練을 시키고, 앞으로 增大될 이 分野의 새로운 訓練需要에 對한 반반의 教育實施를 爲해 지금부터 教育方法을 研究,

(表 5)

사회사업과정 민별 연도별 실적 ('70 ~ '81)

반 별	연 도 별												
	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계	12,424	667	460	651	1,015	1,155	1,242	1,507	1,428	1,109	566	878	1,746
1. 연찬회 및 세미나	409	409	* 71년										
2. 탁아교사 양성반	18	18	도는									112	200
3. 탁아시설 관리자반	351	39	반 별										
4. 탁아시설 보호반	79	79	차 료										
5. 시설보호반	440	82	가 없음	43	46		82	87					100
6. 양로복지시설장반	20	20											
7. 탁아교사반	802			78	43	105	39	87			50		400
8. 탁아시설장반	116			89	27								
9. 부녀지도자반	250			250									
10. 모자복지시설장반	17			17									
11. 사회복지시설관리자반	240	20			38				68		114		
12. 사회복지 지도자 연찬회	1,414			141	100	250	300	300	293	30			
13. 직업상담 요원반	33			33									
14. 지방분산훈련지도교사반	61				9	23		16		13			
15. 영육아시설장반	20				20								
16. 특수시설장반	34				34								
17. 세미나 부녀지도자 강습회	100				100								
18. 지방분산훈련	4,660				598	582	674	921	911	974			
19. 시설직원자격 취득자반	53					28	25						
20. 지방분산훈련 교사반	70					15					20	19	16
21. 노인복지 지도자반	115					26					89	62	200
22. 사회복지기관 요원반	81					26			55				

(表 6) 공무원과정 인별 연도별 실적 ('70~'81)

인 별	연 도 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계	계	4,879	289	248	336	298	230	324	541	469	512	515	612
1. 고급관리자반		21	* 71년	26	23								
2. 중급관리자반		78	은 반	29	27								
3. 사회행정반		132	별차로	56	82	79		70	123	199	194	298	
4. 가정복지요원반		205	가없음	77									
5. 부랑아전문적반		20											
6. 국공립시설요원 현업자반		24											
7. 노동행정반		665		53	84	58		66	73	117	114		
8. 부녀상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반		789			115	111		114	154	97	59	69	70
9. 공무원반		230					230						
10. 부녀아동계장반		200						33	91	56			
11. 사회복지행정관리자연수회		247									59	118	70
12. 부녀아동복지행정관리자연수회		49						21			28		
13. 신규채용반		58									58		
* 71년 종합		289	289									30	
14. 부녀아동상담관리자반		30											200
15. 사회행정 4급반 (6.7급)		200											100
16. 사회행정 5급반 (8.9급)		100											150
17. 의로보험 행정반		150											22
18. 부녀아동 행정관리자반		22											

* 81년은 실시 계획 안원임.

1965年 保健社會部 主催 ECAFE 후원으로 이루어진 韓國社會事業教育研鑽會에서이며 여기에서 이제까지 지니고 온 苦悶과 問題를 털어 놓게 되었고, 이 때를 起點으로 教科課程上에 變化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韓國의 實情에 알맞게 調整되어 가르쳐야 한다.” “國家의 必要와 學校 資源에 맞추어야 한다”¹⁹⁾는 주장이 나오게 되어 最初로 脫 美國 모델의 歷史가 시작되었다. 이 모임을 계기로 韓國社會事業 大學協議會가 탄생되어 社會事業教育에 관한 論議가 公式 非公式으로 이루어졌다. 즉 “美國 모델이 가장 理想的인 것이다”라는 觀念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것을 찾는 機를 形成하는 母體가 된 것이다.²⁰⁾

이 大學協議會가 主體가 되어 統合的 方法, 地域社會開發을 爲한 教育, 家族計劃事業, 豆親的 水準의 教育, 産業社會에의 參與, 나아가서는 80年代를 向한 社會事業教育 등으로 擴大·變化하기에 이르렀고 韓國의 社會事業教育 土着化를 爲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2. 最近의 動向

가. 統合的 方法

종래 社會事業 方法論의 美國式 모델에서 脫皮하여 各國의 社會的 必要에 맞는 教育을 實施되어야 하며, 아시아 諸 國家들의 實情에 비추어 大學院 위주의 專門化 教育보다는 大學水準 以下の 教育背景을 가진 大衆을 상대로 하는 教育, 「個別社會事業」, 「集團社會事業」, 「地域社會組織事業」 등의 方法을 獨立적으로 適容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方法間의 共通되는 問題解決方法(Problem Solving Theory)으로서, 專門的 次元이 아니라 一般的 次元에서 問題를 다루는 方法 및 個人만을 對象으로 삼지않고 社會政策과 社會計劃 樹立에 參與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 統合的 方法이다. 이는 특히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에 있어 社會事業을 爲한 基本方向으로서 가장 추천할 만한 接近方法이라는 結論이 나온 것은 1974年 6月 UN, ECAFE 主催 아시아地域 社會事業教育者 세미나에서 였다.²¹⁾

이 會議의 影響은 各國에 미치기 시작하여 많은 變化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對한 慎重한 論議와 檢討가 1972年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를 中心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大學에서 個別社會事業, 集團社會事業, 地域社會組織論 등의 名稱을 없애고, 社會事業方法論이라는 科目으로 대치하거나 社會事業 總論과 各論으로 區分하여

19) 保健社會部, ECAFE 地域內의 要開發 分野와 同問題點에 관한 社會事業教育과의 關聯性, ECAFE 韓國社會福祉教育 연찬회 보고서, p. 41, 1968.

20) 南世鎭, Ibid, p. 7.

21) Ibid, pp. 10~14, pp. 21~24.

教育하는 경향이 있다.

나. 開發的 機能의 具體化

現代社會에 있어서 社會事業의 役割은 治療와 豫防에 더하여 開發的 機能을 遂行하여야 하며, 특히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더욱 重要하다는 點이 1974年 이후의 國內外 모임에서 계속 強調되었다. 1974年 7月의 國際會議에서는 國家開發事業에 社會事業이 參與할 것과 參與分野 및 方法을 論議하였고,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에서는 이에 앞서 1973年 8月 國家開發事業의 일환인 새마을運動을 社會事業과 比較해 봄으로서 社會事業의 役割과 參與 可能性을 摸索하였다.²²⁾

1974年の 國內會議에서는 一進하여 社會開發에서 社會事業이 할 수 있는 役割을 理論的인 側面에서 體系化하고 開發的 機能을 遂行하기 爲한 教科課程上의 修正을 試圖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UN의 권유를 全的으로 받아들여 人口成長率의 減少, 住民들의 再定着, 家庭分裂兒童 및 靑少年, 心身障礙者, 社會防衛 등의 問題가 있는 分野에 社會事業이 參與하여야 할 것이며, 教科課程上에는 人口의 力動과 家族計劃, 社會開發論, 統合的 方法論, 社會問題, 社會調查, 社會政策 및 計劃 등이 새롭게 設置되어야 함을 主張하고 있다.²³⁾

이외에도 開發的 機能을 遂行하기 爲해서 必要한 社會福祉政策, 社會調查, 實習 등의 教科內容에 對한 보다 상세한 試案이 提起되고, 傳統的 社會事業 方法 - 個別社會事業, 集團社會事業, 地域社會組織事業 - 의 活用方案도 보다 具體化되어졌다. 社會正義 具顯과 人的資源의 質向上, 住民의 參與態度나 制度의 近代化, 構造的 改革 등 開發的 課題를 遂行함에 基本的 方法이 보다 效率的으로 適用되어질 수 있다는 點이 強調되었다.²⁴⁾

더우기 1977년부터 시작된 政府의 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은 名實共히 社會開發을 爲한 기반조성의 時期로 方向이 세워졌고 1979년에는 施政目標에 “社會開發政策의 擴充”이란 內容이 包含되었으며 80年代에 들어서는 “福祉國家 建設”이란 大問題가 國家目標로 具體化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教科課程開發을 적극 發展시켜야 할 立場이라 하겠다.

다. 現實參與에의 強調

1976年の 社會事業 國際會議의 主要 要指는 社會開發이란 概念을 各 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現實的 問題와 關聯하여 細分化하였고 이에 對한 社會事業의 적극적 反應을 各

22) 金泳頌, “새마을運動에 있어서 社會事業의 役割”,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 社會事業教育者세미나 資料集, pp. 5~22.

23) 張仁協, 社會事業 教科課程의 構想,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 社會事業教育者세미나 資料, 1977. 3.

24) 南世鎭, “韓國社會事業 教科課程 開發을 爲한 研究, 其二”, 韓國社會福祉, 韓國社會福祉研究所, p. 6.

國家의 歴史的 脈絡속에서 찾아 모노속 矚力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地域에 있어서는 貧困, 過剩人口, 無知, 질병, 영양실조, 失業, 都市와 農村의 發展上的 格차 등이 重要 社會問題로 指摘되었다. 社會事業 教育은 이들 社會的 現實과 關聯되어 遂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地域의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 社會事業教育은 西歐에서 教育받은 사람에 依해 주도되거나 아니면 西歐 教科課程을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問題意識의 視覺이 西歐式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社會事業 教科課程의 土着化에 對한 要請은 매우 강하지만 教育者나 施設裝備의 不足, 實習環境의 미비 등 現實的 제약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各 國家는 저마다의 國家計劃과 于先 順位 範圍內에서 教育目標을 찾아 새로운 형태의 教科課程 設定이 부족이 한 것이다. 그로 이러한 面에서 아시아 國家는 社會事業人力開發에 力點을 두어야 함이 強調되었다.²⁵⁾

國家的 狀況이나 計劃은 社會事業教育으로 하여금 새로운 課題를 創案해 주고 教科內容을 修正하여 實習機關을 擴大하도록 자극과 矚力를 주는 相互關係가 있다. 또한 社會事業教育者는 政府나 機關에 자문을 하게 되어 부족한 高級人力을 代身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調査活動을 적극 推進함으로써 社會的 現實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에 對한 正確한 知識과 더불어 貢獻할 수 있는 方法을 찾게되고 나아가 教育資料의 開發도 可能하게 된다.²⁶⁾

1977年의 2次에 結친 國內 社會事業教育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現在와 未來를 보다 現實的으로 理解하고 急變하는 社會變動에 수반되고 社會的 要求에 效果的으로 대처하는 教育이 強調되었으며, 새 마을 運動 및 社會事業分野가 처해진 社會的 現實에 社會事業家가 적극 參與하는 方案이 무엇이고 이를 爲한 教育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教科課程上의 反映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討議되었다.²⁷⁾

라. 巨視的 水準으로의 擴大

教科課程 開發의 또 하나의 變貌를 살펴보면 社會事業의 役割이 特殊個人이나 集團을 爲한 活動에서 一般國民들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活動으로 그 範圍를 擴大해 감이 바람직하다는 主張이 1960年代 부터 대두된 點이다. 이 같은 主張은 계속 國內외의 호응을 받아 보다 具體的인 方法으로까지 發展되어 갔으며, 1974年 以後부터는 教科課程上에도 뚜렷한 區分을 가지게끔 試圖되고 있다.

傳統的 社會事業 특히 美國 모델에 基礎한 教育은 주로 微視的 水準에서의 活動만을 중심으로서한 方法上的 技術을 強調한데 反하여 開發的 機能을 遂行하고 各國이 가지는 現

25) A. Almanzor, Social Realities and The Response of Social Work Education in Asia,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chools of Social Work, 1976. Ibid. p. 7.

26) 南世鎭, 實習目標.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 社會事業教育세미나, 1975. Ibid. p. 7.

27) 社會事業教育의 課題와 展望 討議 課題,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 1977. Ibid. p. 8.

其의 結果에 對하여도 社會福社政策 및 計劃科目이 반드시 教科課程에 包含되어야 함을 強調하고 세부내용까지 檢討하였으며 個人水準에서의 問題뿐 아니라 國家나 地域社會水準에서의 社會問題를 다루고 解決함에 社會事業家가 參與할 수 있도록 教育해야 한다는 점이 재삼 強調되었다. 이는 社會事業 教科課程이 從來의 方法論에 더하여 새로운 目標을 과정에 追加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社會事業 教育目標가 擴大되는 重要한 變化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과정의 設置는 한 두 科目의 追加나 消滅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意味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全體 教科課程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는 相異한 두개의 知識體系에 기초한 教科課程이 따로 構成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教育對象水準에 따라 相異한水準에서의 教育으로 區分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²⁸⁾

時間적으로 볼때 巨視的 接近의 構想이 開發的 機能의 그것보다 앞서 擡頭되긴 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社會開發에 따르는 社會事業의 開發的 機能에 對한 論議가 本格化됨으로써 巨視的 接近도 同時에 다루어 지게 되었다. Kulkani의 “社會開發은 變化와 成長의 要求에 對處하기 爲하여 現存하는 社會體系의 能力을 向上하려는 計劃된 介入의 巨視的 戰略을 涵축하고 있다.”²⁹⁾는 表現에서도 社會開發과 巨視接近과의 關係가 나타나 있다.

또한 社會開發過程이 個人爲主의 범주에서 부터 地域社會 全體와의 關聯性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巨視的 接近과의 密接한 關係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³⁰⁾

마. 大學教育 目的의 定着

最初로 우리나라에서 社會事業教育이 大學에서 實施되었을때 美國의 大學院 教科課程을 中心으로 構成되었다. 大學院 教科課程을 大學에 適應시킴으로 여러가지 問題點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社會事業教育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즉 專門教育에 있어 質的인 問題와 아울러 大學教育의 目標을 設定하여야 한다는 艱박한 問題가 계속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問題는 事實上 아시아地域 國家를 비롯한 開發途上國 대부분에서 공통으로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國際會議에서도 여러번 論議가 된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까지는 社會事業教育을 大學院水準에서만 本格的으로 實施한다는 것이 거의 原則으로 받아들여져서 大學水準教育 自體를 爲한 독자적 目標設定에 具體的인 努力은 거의 하지 않았다.³¹⁾

28) Ibid, p. 9.

29) P. D. Kulkani : Social Development News Letter, ESCAP March, 1974, Ibid, p. 9.

30) 張仁協 (1977) op, cit. p. 10, Ibid, p. 9.

31) Ibid, pp. 9~10.

一기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사회사업 교육은 비주류적이었던 바를 넘어, 그 나라의 固有의 狀況에 맞추고 國家開發과 社會的 要求라는 脈絡속에서 役割을 發見해야 한다는 主張에 受容的 態度가 강하게 되자 점차 들과구름 찾게 되었다. “……이제 社會事業 教育을 爲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³²⁾는 國際社會事業大學 協議會長의 宣言이 이제 現實化된 것이다. 1971年 國際社會事業教育協議會의 教育 方針에도 “實踐에 對備하기 爲한 社會事業教科課程은 大學 水準에서의 社會事業實踐에 적절한 知識, 態度 및 技術을 習得하기 爲한 機會를 學生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이 明示되었다.³³⁾

이에 大學水準 教育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大學卒業者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서 되겠는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의 獨立된 社會事業 家로서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知識과 能力을 가지게끔 教育한다는 目標가 大學水準의 교육과정에 設定된 것이다.

바. 새로운 問題 - 實驗大學

大學院 水準보다는 大學 水準에서 社會事業家를 養成하려는 國際社會事業學系의 趨勢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大學은 最近 大學 全體에 實驗大學制度가 생김으로 學制가 모두 改訂되고 졸업이수 학점과 전공학점이 줄어들므로 인해 한 專門家를 배출해 내야하는 社會事業學科는 매우 어려운 問題에 봉착하게 되었다.

實驗大學의 취지가 大學 水準에서 專門教育을 避하고 敎養教育을 擴大하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事業教育의 立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制度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實驗大學制度가 採擇되면서 부터 大學의 졸업이수 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어 들었으며 전공학점도 80학점에서 60학점으로 되었고 이 가운데 專攻必須는 30학점으로 되어 있다. 學點單位도 대부분 3學點으로 統一되다시피하여 實際적으로는 學科目的 數가 더욱 줄게 되었다. 동시에 實習을 爲한 시간배정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부전공 제도마저 생겨나서 주전공을 48학점, 부전공을 24학점 履修하면 社會事業 主專攻과 다른 學科 副專攻으로 학사학위를 取得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과 63學點을 履修한 學生을 원칙적으로 區分을 하여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을 爲한 教育目標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問題와 履修할 科目의 選定이 急先務이다. 보조사회사업가로서 資格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社會福祉에 對한 교양과목을 履修한 程度로만 取扱할 것인가? 이러한 제한된 條件下에서 과연 社會的 要求에 副應하는 役割遂行의 能力을 가진 社會事業家를 배출할 教育課程을 만든다는 것이 無理이고 16個 科目만을 履修한 사람이 社會事業을 專攻하여

32) H. Stein, op. cit., Ibid. p. 10.

33)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Undergraduate Programs in Social Work, 1971, pp. 12~13. Ibid. p. 10.

약사약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과연 10個 科目으로 社會事業家를 教育시킬 수 있는 教育課程을 구성할 수 있겠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라고³⁴⁾ 南世鎭 教授는 力說하고 있다.

V. 社會福祉 要員 訓練의 教科課程開發을 爲한 制言

1. 養成教育

첫째, Ⅲ章 2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在의 양성 2반 50명, 양성 3반 80명, 總 130명의 教育은 그간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增員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 必要性이 절정에 달하고 있어 教育施設의 擴張을 감수한 養成班의 擴大가 要請되고 있다 하겠다.

둘째, 養成教育의 專門化를 기하기 爲해서는 社會福祉 從事者라는 包括的인 대상으로 教育하기 보다는 社會福祉 從事者를 각 專門分野別로 區分하여, 예를 들면 託兒要員班 相談要員班, 特殊施設 要員班 등으로 專門化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셋째, 地域社會組織이나 地域社會開發이 社會事業의 重要 方法論으로 그동안 大學이나 養成教育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實際 教育을 받은 社會事業家가 새마을 事業이나 都市 및 農村地域 社會地域社會開發 事業에 關여하는 경우는 극소수라 하겠다. 1968年 保社部가 作成한 ECAFE會議 報告書에 依하면 아시아·태평양地域 多數 國家에서 社會事業補助員이 각종 計劃事業에 廣範圍하게 活動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실제로 福祉計劃事業을 擴張하고 多樣性있게 하며 都市 一邊度의 傾向에서 農村開發事業으로 關心을 옮기는데 必須不可缺한 要素의 하나임이 立證되었다³⁵⁾ 한다. 그러므로 社會福祉 要員이 一線에서 國家의 開發的 機能을 遂行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教育內容上的 강조가 必要하겠다.

넷째, 國立社會福祉 研修院 養成教育의 教科目を 大學의 교과목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각 大學과 國立社會福祉 研修院의 교과목은 대개 個別社會事業, 集團社會事業, 地域社會組織事業 등의 名稱으로 傳統的 方法論이 獨立的으로 區分되어 教授되고 있는데 Ⅳ章에서 살펴본 바에 依하면 이것은 大學院 위주의 專門的인 教育에 보다 適合하다고 하였다. 大學水準 以下の 教育 背景을 가진 者에게는 個別, 集團, 地域社會組織의 세 가지 방법간에 共通되는 問題解決方法(Problem Solving Theory)에 依해 一般的 次元에서 問題를 다루며 個人만을 對象으로 하지 않고 社會政策과 社會計劃 樹立에 參與하는 것 등을 主要 골자로 하는 統合的 方法論(Integrated Approach)이 가장 추천할 만한 接近

34) Ibid. p. 12.

35) 保健社會部, ECAFE 地域內의 “要開發 分野와 同問題點에 對한 社會事業 教育과의 關聯性 研究會 報告 草案”, 1968.

학 과 과 목	대 학 수	학 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학 년		성심 여대	승 진 대	한 사 대	부 산 대	서울 여대	충 암 대	이화 여대	서 울 대	국립사회 부 지 원 수 원	
		학 점 수	대 학 수			학 년	대 학 수										
사회 복지 개론 (사회 복지학)	8	2 3 6	1 5 2	7	1	1 1.2 2	3 1 4		○	○	○	○	○	○	○	○	
인간 행동 과 환경 (발 달)	8	3 6	3 5	4	(5) 4	2 2.3	7 8	○	○	○	○	○	○	○	○	○	○
사회 복지 발달사	6	2 3	1 5	2	4	1.2 2 3	1 4 1	○		○	○	○	○	○	○	○	
Case Work	7	3 6	4 9	6	3	2.3 3	2 5	○		○	○	○	○	○	○	○	○
Group Work	8	3 4 6	6 1 1	6	4	2 2.3 3	1 1 6	○		○	○	○	○	○	○	○	○
C. O	7	3 6	5 2	5	3	3 4	7 2	○		○	○	○	○	○	○	○	○
사회 사업 조사	8	3 6	7 1	5	3	2 3	4 4	○	○	○	○	○	○	○	○	○	○
사회사업 행정	8	3	8	4	4	2 3 4	1 4 3	○	○	○	○	○	○	○	○	○	○
사회 복지 정책 (및 계획)	8	3	8	6	1	3 4	3 5	○	○	○	○	○	○	○	○	○	○
사회 복지 시책																	○
사회 사업 실습	8	6 7 9	5 1 2	8	2	3.4 4	7 1	○	○	○	○	○	○	○	○	○	○
사회 통계 (통계학개론)	3	3 4	2 1	1	2	2 3	1 2	○	○			○					
아동 복지 (청소년복지)	3	3	3	2	1	2 3	2 1			○		○		○			○
현대 생활 과 사회과 학	1	6	1	1		1	1	○									

학과 과목	내 학 수	학 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학 년		성심 여대	중 전 대	한 사 대	무 산 대	서울 여대	중 앙 대	이화 여대	서 울 대	국민사회 복지 연구원	
		학점수	대학수			학 년	대학수										
사회문제	8	2 3 6	1 5 2	1	7	2 3 4	5 2 1	○	○	○	○	○	○	○	○	○	○
영문 강독 (원서 강 독)	6	3 4 6	2 1 2	2	4	1 2 3	1 4 1	○	○	○		○	○		○	○	○
(사회 사 업 기초영 어)		1.4	1														○
부녀복지																	○
보 음동 및 늘이지도 육 공작지도 아동문학 음 악 학 지 도 법																	○
사회 입법	2	3 6	1 1	1	1	3	2	○		○		○					○
사회 개발 론(과 사 회복지)	3	3	3			2 3 4	1 1 1	○					○	○	○	○	○
통합 사회 사업	1	3	1			4	1	○									○
인구 및 가 족계획 사 업	4	2 3	1 3			2 3 4	1 2 1	○		○	○						○
산업 사회 학	1	3	1			4	1	○									○
청소년 연 구(비행)	3	3	3	1	2	2 3 4	1 1 1	○		○	○						○
사회 발달 사	1	3	1	1		3	1	○									○
도시 사회 학	2	3	2			2 3.4	1 1	○					○				○
임상 심리 학	1	3	1	1		3	1	○									○
사회 심리 학	4	2 3	1 3	2	2	2 3.4 4	2 1 1	○	○	○		○					○

학과 과목	과 학 수	학 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학 년		성심 외대	승 진 대	한 사 대	부 산 대	서울 외대	중앙 대	이화 외대	서울 대	국립사회 복지 연구원	
		학점수	대학수			학 년	대학수										
노인학 (부 지)	3	2 3	1 2		3	2 4	1 2	○		○	○						○
지역 사회	1	3	1		1	2	1		○								
대인 관계	1	3	1		1	3	1		○								
사회 사업 연구	2	2 3	1 1		2	4	2		○			○					
사회 사업 세미나 (연 습)	6	3 4 7	4 1 1	2	4	4	6		○	○	○	○	○	○			
장애자 부 지	2	3	2		2	2	2			○	○						○
의료 사회 사업 (보건 및 의료부 지)	5	3	5		5	2 3 4	1 1 3			○	○		○	○	○		○
표정 사업	1	2	1		1	3	1			○							
가정 복지	5	2 3	3 2		5	2 3	2 3			○	○	○	○			○	
C. D	2	3	2	1	1	3 4	1 1			○			○				
표우학																	○
사회 보장	2	3	2	1	1	3 4	1 1			○	○	○	○				○
상담 심리 (기술)	1	3	1	1		3	1			○							○
정신 사회 사업	1	2	1		1	4	1			○							
공중 위생 (보건)	1	3	1		1	4	1			○							○
정신 위생	2	2 6	1 1	2		3 4	1 1			○		○					○
공적 부조	2	2 3	1 1		2	4	2			○	○						
직업 지도 론	1	2	1		1	4	1			○							
사회 복지 제도 비교론	2	3	2		2	4	1				○						○

학과목명	대학수	집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학 년		성심 여대	충 전 대	한 사 대	부 산 대	서울 여대	중 앙 대	이화 여대	서울 대	국립사 부 연 수	
		학 점 수	대 학 수			하 년	대 학 수										
사회 복지 시설 운영 론	2	3	2		2	3	2				○					○	
슈퍼 비전	1	3	1		1	4	1				○						
사회 사업 이론	1	3	1		1	4	1					○					
사회 복지 사상 (사회 사상사)	2	3	2	1	1	4	2			○			○				
인간 관계 와 커뮤니 케이션	1	3	1		1	2	1							○			
사회 구조 와 이탈행 위	1	3	1		1	3	1							○			
사회 복지 자원론	1	3	1		1	3	1							○			
행동 장애 와 사회치 료	1	3	1		1	4	1							○			
프로 그램 실기	1	3	1		1	4	1							○			
경제학 원 론	2	2 3	1 1		2	1 3	1 1	○				○					
정신 의학	1	3	1		1	3	1	○									
사회 사업 방비론 (총 론)	3	3 1.2	2 1	2	1	2 3 3.4	1 1 1		○				○	○			
사회 복지 와 법 (복 지법령)	6	2 3	1 5		6	3 4	3 3		○		○	○	○	○	○		○
사회 사업 특강	3	2 3 4	1 1 1	2	1	3 4	2 1			○			○			○	○
교정 사회 사업	1	2	1		1	3	1			○							
논문	1	2	1	1		4	1			○							
정치학 원 론 (개론)	2	2 3	1 1	1	1	1	2				○	○					

학과 과목	대학 수	학 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학 년		성신 여대	승 정 대	한 사 대	부 산 대	서울 여대	중 앙 대	이화 여대	서울 대	국립사회 복지 연구원	
		학점수	대학수			학 년	대 학 수										
사회학 개론	3	2 8	1 2	3		1 2	2 1				○	○	○				○
행정학 원론	1	3	1	1		1	1				○						
심리학 개론	1	3	1	1		1	1				○						
산업 복지 (노동복지)	4	3	4		4	3 4	1 3				○		○	○	○		○
문화 인류	1	2	1		1	2	1					○					
제외 내용 작성	1	2	1	1		3	1					○					
사회 변동	1	2	1		1	4	1					○					
사회학 이 론	1	3	1		1	4	1					○					
빈곤 예방	1	3	1		1	4	1										○
복지 계획	1	3	1		1	4	1										○

方法이라고 1974年 ECAFE 주최 아시아地域 社會事業教育者 세미나에서 結論지어졌다. 36) 그러므로 社會事業 總論과 各論으로 科目名稱을 변경하고 統合的인 方法論을 中心으로 教育하는 것이 時代的 趨勢에 副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方法에 對한 理論上의 作業化가 아직 미비하고 널리 보급되지 않은 점 등을 問題點으로 指摘할 수 있다.

다섯째, 大學의 專門社會事業家を 養成하는 教育目的 및 그에 따른 教科課程과 關聯하여 社會福祉 研修院의 養成教育 또는 社會福祉 從事者의 現任訓練의 目的등이 相互 關聯性和 差異點을 中心으로 成文化될 必要가 있다.

2. 社會福祉 現任訓練

民間人 社會福祉 從事者를 爲한 13個班과 公務員을 爲한 6個班이 있는데 이中 心身障礙者 施設 生活指導教師班과 婦女相談員 및 兒童福利指導員班, 醫療保險行政班, 婦女兒童 行政 管理者班, 社會福祉 行政 管理者班의 教科目과 時間 및 教育方法은 다음 表와 같다.

36) 南世績, (1978), op. cit. p. 5.

교육기간 : 2 주

구 분 야	과 목	시 간								
		계	강의	토의	분 임 구	사 예	실 연	실 습	견 학	기 타
공 공 과 목	1. 사회정파와 정의사회 구 현	2	2							
	2. 새시대의 공직자 윤리	2	2							
	3.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2	2							
	4. 전자계산기 활용 기초지 식	2	2							
	5. 보안업무	1	1							
	6. 비상대비	1	1							
	7. 행정법 실무	5	3	2						
	8. 특 강	2	2							
건 문 과 목	1. 사회복지 시책	2	2							
	2. 가족치료	5	4	1						
	3. 부녀아동복지와 개별사 회사업의 접근	7	3	1		3				
	4. 부녀아동복지와 집단사 회사업의 접근	7	4	1		2				
	5. 부녀아동복지와 지역사 회조직사업의 접근	7	4	1		2				
	6. 인간행동과 심리작용	6	3	1		2				
	7. 부녀아동복지	10	3	1		2			4	
	8. 부녀아동복지 행정실무	3	2	1						
	9. 모자보건 (어린이 영양)	3	2				1			
소양 과목	1. 건전오락 및 체육	2					2			
	2. 특 강	2	2							
기타	등록 인 · 수료식 · 평가	5								5
계		76	44	9		11	3		4	5

교육기간 : 1 주

구 분 분 야	과 목	시 간								
		계	강 의	토 의	분 임 연구	사 례	실 연	실 습	견 학	기 타
공 통 과 목	1. 사회정화운동과 정의사회 구현	1	1							
	2. 국제정세와 한국의 연보	2	2							
전 문 과 목	1. 사회복지	3	2	1						
	2. 사회복지	4	2		2					
	3. 의료보험제도 및 법해설	3	2	1						
	4. 의료보험 실무	16	6	6					4	
	1) 자격관리업무	2	1	1						
	2) 급여업무	2	1	1						
	3) 징수업무	2	1	1						
	4) 심사업무	2	1	1						
	5) 정산업무	2	1	1						
	6) 의료수가	2	1	1						
	7) 기 타	4								4
5. 국민복지 연금	3	2	1							
소 양 과 목	1. 체육 및 건전오락	1						1		
	2. 특 강	2	2							
기 타	등록 및 입·수료식	3								3
계		38	19	9	2		1		4	3

多様化는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教科目에서도 그 나라 實情과 關係하여 具體化되는 傾向을 알 수 있다.³⁵⁾

그러나 醫療保險 行政班의 커리큘럼을 보면 社會福祉와 社會保障을 理解하기 爲한 科目의 追加가 必要하며, 의료보호과목의 追加 등 더욱 커리큘럼을 發展시킨 必要가 있다

35) 國立社會福祉 硏究院, "東南亞地域 社會福祉分野視察 硏究 報告書", 1977.

교육기간 : 3 일

구 분 분 야	과 목	시 간								
		계	강 의	토의	분 임 구 분	사 례	실 연	실 습	견 학	기 타
전 문 과 목	1. 부녀아동복지시책	1	1							
	2.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2	2							
	3. 사회보장	2	2							
	4. 복 강	2	2							
	5. 왜냐토의									
	가. 부녀복지	4		4						
	○ 가족문제									
	○ 윤락문제									
	○ 근로여성문제									
	나. 아동복지	4		4						
○ 시설보호(탁아소 포 합)										
○ 모자보건										
○ 비행소년										
기타	입·수료식 및 등록	3								3
계		18	7	8						3

또한 의료보험 내지 사회보장과 關聯된 科目은 사회행정반에는 現在 다루어 지고 있으나 다른 반에도 소양과목으로 追加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提案하고자 하는 事項은 視聽覺教育方法의 開發이다. 現任訓練의 特徵은 短期間의 集中教育을 하므로 주어진 時間을 最大한 活用하여 教育效果를 기하여야 하는데 對象者가 高年齡層이 많고 教育水準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Overhead Projector 나 영화·스라이드 등의 視聽覺 裝備를 活用한 現代化된 視聽覺 教育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한 成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社會福祉 研修院의 教育內容中 國정과 關聯된 시책과목이나 精神訓練 科目, 새마을 訓練科目이나 家族計劃科目 등에는 視聽覺資料가 活用되고 있으나 社會福祉 專門科目과 關係된 分野에서 나와있는 視聽覺資料가 全無이다. 그러므로 社會福祉에 關한 視聽覺教材의 製作·報及이 이루어진다면 中央 研修機關으로서의 면모가 빛날 것이다.

교육기간 : 3 일

구 분 야	과 목	시 간								
		계	강 의	토 의	분 입 구 연	사 례	실 연	실 습	견 학	기 타
전 문 과 목	1. 사회복지시제	2	1	1						
	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2	1	1						
	3. 사회복지	2	1	1						
	4.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2	1	1						
	5.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 점 재건 방안	5	1		4					
	6. 특 강	2	2							
기 타	입 · 수료식 및 등록	3								3
계		18	7	4	4					3

参 考 文 献 및 資 料

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 Short-Term Training for Social Development: The Preparation of Front-Line Workers and Trainers, edited by Barry D. Rigby, 1978.
2. I. A. S. S. W., Paraprofessional Training for Social Development, 1979.
3. Howard Jones ed. Towards a New Social Work RKP, 1975.
4. Walter A. Friedlander,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Prentice-Hall, 1975.
5. Katherine A. Kendall, Reflections on Social Work Education 1950-1978, IASSW 1978.
6. Harry Spixcht, The Deprofessionalization of Social Work, Paul E. Weinberger,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second ed., 1974.
7. Danniell Tanner,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1975.
8. Mary Waring, Social Pressures and Curriculum Innovation, 1979.
9. Angelina Almanzor, The Role of Schools of Social Work in Paraprofessional Training, 1979.

11. _____, ECAFE 地域內的 “要開發 分野와 同問題點에 對한 社會事業 教育과의 關聯性 研究會 報告 草案”, 1968.
12. 國立社會福祉 研修院, “사회사업교직자연찬회보고서”, 1969.
13. _____, 사회복지종사자인력조사 보고서, 1970.
14. _____, 동남아지역 사회복지분야 시찰 연구보고서, 1977.
15. _____, 1970 ~ 1981, 기본훈련계획.
1970 ~ 1981, “ ”
16. 南世鎭, 韓國社會事業 教科課程 開發을 爲한 研究, 1975, 『韓國社會福祉』.
17. _____, 上同 題目 - 其二 -, 1978.
18. 金泳謨, 새마을運動에 있어서 社會事業의 役割,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 社會事業教育者 세미나 討議 資料集, 1973.
19. _____, 社會福祉의 자주적 모색, 명민사, 1978.
20. 魚允培, 80년대를 향한 社會福祉의 과제와 駁略,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1979.
21. 朴俊熙, 80년대 社會福祉 實現을 爲한 教育戰略, 『社會福祉』, 1979.
22. 裴成東, 80년대 社會福祉 政策의 과제 - 政治學的 接近 -, 『社會福祉』, 1979.
23. 張仁協, 社會事業教科課程의 構想,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 社會事業 教育세미나 資料, 1977.
24. 李廷鎬, 社會福祉人力需給에 關한 考察,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1979.
25. 孫義陸, 社會福祉要員의 現職訓練 指導方法,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1979.
26. 張素英, IASSW 主催 “社會開發을 爲한 準專門 訓練” 세미나 參加 歸國報告, 1979.
27. 法典.
28. 保健社會部, 『보사통계연보』, 1980.
29. 노동청, 『노동통계 연감』, 1980.
30. 경제기획원, 『한국통계 연감』, 1979.
31. 문교부, 『문교통계 연감』, 1977.
32. 대한민국 정부, 『행정백서』, 1981.